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토요일에 대한 강화된 생활소음·진동기준 근거 마련 >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76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토요일에 대한 강화된 생활소음·진동기준 근거 마련 .....        | 2 |
| ※ 참고자료 .....                                | 8 |
| 1.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별표 8]) ..... | 8 |

## I. 제안경위

2024년 9월 12일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들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 여건을 보장하고자, 사업장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시행규칙 [별표8]은 생활 소음과 진동의 제한 기준을 명시하고, 주거지역이나 자연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상업 지구 등 여타 지역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휴일에는 일정 지역에 대하여 기준보다 5dB(A) 더 강화된 소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요일은 강화된 소음·진동 규제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어 토요일 역시 공휴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 소음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휴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평일보다 더욱 엄격한 규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주민들이 더욱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21조제2항).

### Ⅲ. 검토의견

#### 1. 토요일에 대한 강화된 생활소음·진동기준 근거 마련

개정안은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에 적용되는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기준을 다른 날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엄격하게 두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후단 신설).

#### [ 개정안 조문대비표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br>① (생 략)<br>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br>① (현행과 같음)<br>② -----<br>-----<br>-----, 이 경우 <u>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에 대하여는 다른 날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두어야 한다.</u> |

현행법 제21조<sup>1)</sup>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

1) 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

수·구청장이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을 규제하도록 하고,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현행법<sup>2)</sup>에 따라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현행법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sup>3)</sup>에서는 생활소음·진동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별표 8]<sup>4)</sup>에 따르면 주거지역, 종합병원·학

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2) 법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6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

3)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교·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사장의 생활소음에 대하여는 공휴일에만 기존 기준 대비 5dB (A)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 공사장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 기준 ]

|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             |                                         |                     |                     |
|------------------------------------------------------------------------------------------------|-------------|-----------------------------------------|---------------------|---------------------|
| 1. 생활소음 규제기준                                                                                   |             |                                         |                     |                     |
| [단위 : dB(A)]                                                                                   |             |                                         |                     |                     |
| 대 상 지 역                                                                                        | 시간대별<br>소음원 | 아침, 저녁<br>(05:00~07:00,<br>18:00~22:00) | 주간<br>(07:00~18:00) | 야간<br>(22:00~05:00) |
|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 · 종합병원 · 공공도서관 | 공 사 장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 나. 그 밖의 지역                                                                                     | 공 사 장       | 65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

비고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자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일부 발췌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 5)에 따르면, 공휴일이란 해당 법에 따

4) (참고자료 1)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별표 8])

5)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른 공휴일과 일요일만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토요일의 경우에는 법적 공휴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강화된 생활소음 기준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런데 2004년 「근로기준법」 개정<sup>6)</sup>으로 주5일제가 도입되어 일반 국민들에게는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공휴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토요일 또한 법정 공휴일과 동일하게 보다 엄격한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주민들의 보다 조용하고 평온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토요일에도 소음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공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지체상금을 피하기 위한 무리한 평일 작업 강행으로 근로자 안전사고 우려 증가, 공사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설업계<sup>7)</sup>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

---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교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법률 제18291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휴일은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으로 보임.

참고로,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토요일 공사의 경우에는 주중과 동일한 소음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호주의 경우에는 소음·진동의 기준은 주중과 동일하게 하되 토요일은 주중보다 작업 허용시간을 짧게 규정하고 있음.

###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기준 관련 해외 사례 ]

| 국가  | 적용시간(요일)           | 규제 내용                                                                                 | 비 고                                |
|-----|--------------------|---------------------------------------------------------------------------------------|------------------------------------|
| 영국  | 주중 공사              | <u>작업시간</u> <u>기준</u><br>08:00~18:00, 70dB(A)                                         | 야간작업 금지                            |
|     | 공휴일 공사             | 작업 금지                                                                                 |                                    |
|     | 토요일 공사 엄격한<br>규제여부 | 0<br>(작업시간 08:00~13:00)                                                               | 토요일은 주중보다<br>작업 허용시간이 짧음           |
| 호주  | 주중 공사              | <u>작업시간</u> <u>기준</u><br>07:00~18:00, 60~75dB(A)                                      | 가능하면 야간작업 금지,<br>용도구역에 따라 다른 기준 적용 |
|     | 공휴일 공사             | 작업 금지                                                                                 |                                    |
|     | 토요일 공사<br>엄격한 규제여부 | 0<br>(작업시간 08:00~13:00)                                                               | 토요일은 주중보다<br>작업 허용시간이 짧음           |
| 프랑스 | 주중 공사              | 작업시간 07:00~22:00<br>※ 일반적인 소음 규제기준 없음                                                 | 야간작업 금지                            |
|     | 공휴일 공사             | 작업 금지                                                                                 |                                    |
|     | 토요일 공사<br>엄격한 규제여부 | X                                                                                     | 주중기준 적용                            |
| 독일  | 주중 공사              | <u>작업시간</u> <u>기준</u><br>(주간) 07:00~20:00, 50~70dB(A)<br>(야간) 20:00~07:00, 35~70dB(A) | 용도구역에 따라<br>다른 기준 적용               |
|     | 공휴일 공사             | 주중과 동일                                                                                |                                    |
|     | 토요일 공사<br>엄격한 규제여부 | X                                                                                     | 주중기준 적용                            |
| 일본  | 주중 공사              | <u>작업시간</u> <u>기준</u><br>(주거지역) 07:00~19:00, 85 dB(A)<br>(그외지역) 06:00~22:00, 85 dB(A) | 야간작업 금지                            |
|     | 공휴일 공사             | 작업 금지                                                                                 |                                    |
|     | 토요일 공사<br>엄격한 규제여부 | X                                                                                     | 주중기준 적용                            |

※자료: 환경부

일반적으로 토요일 또한 공휴일로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과 같이 개별법에서 토요일을 법정 공휴일 수준에 준하여 보다 엄격한 소음·진동규제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휴일에 토요일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휴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법적 정의를 일치시키는 방안<sup>8)</sup>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
| 문 의 처        |
| 02)6788-5536 |

---

8) 환경부 의견

## ※ 참고자료

### 1.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별표 8])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9. 12. 31.>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 대 상 지 역                                                                                                                         | 시간대별<br>소음원 |                            | 아침, 저녁<br>(05:00~07:00,<br>18:00~22:00) | 주간<br>(07:00~18:00) | 야간<br>(22:00~05:00) |
|---------------------------------------------------------------------------------------------------------------------------------|-------------|----------------------------|-----------------------------------------|---------------------|---------------------|
|                                                                                                                                 |             |                            |                                         |                     |                     |
| 가. 주거지역, 녹지<br>지역, 관리지역 중<br>취락지구 · 주거<br>개발진흥지구 및<br>관광 · 휴양개발<br>진흥지구, 자연환경<br>보전지역, 그<br>밖의 지역에 있<br>는 학교 · 종합병<br>원 · 공공도서관 | 확<br>성<br>기 | 옥 외 설 치                    | 60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                                                                                                                                 |             | 옥내에서 옥<br>외로 소음이<br>나오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             | 공 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 사<br>업<br>장 | 동일 건물                      | 45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                                                                                                                                 |             | 기 타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             | 공 사 장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 나. 그 밖의 지역                                                                                                                      | 확<br>성<br>기 | 옥 외 설 치                    | 65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                                                                                                                                 |             | 옥내에서 옥<br>외로 소음이<br>나오는 경우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             | 공 장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 사<br>업<br>장 | 동일 건물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             | 기 타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             | 공 사 장                      | 65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6. 삭제 <2019. 12. 31.>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 시 간 대 별<br>대상 지역                                                                                          | 주 간<br>(06:00~22:00) | 심 야<br>(22:00~06:00) |
|-----------------------------------------------------------------------------------------------------------|----------------------|----------------------|
|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br>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br>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br>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br>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br>종합병원·공공도서관 | 65 이하                | 60 이하                |
| 나. 그 밖의 지역                                                                                                | 70 이하                | 65 이하                |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